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1. 12. 17.)
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21년 12월 29일



목포시의회 규칙 제10호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를 “지방
자치법” 제83조로 하고, “목포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목
포시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을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회”를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는 삭제한다.

제19조의2 제1항 중 “법 제66조의2 제1항”을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 2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 (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발언신청을 허가할 경우 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의원은 회기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거수 또는 전자투표

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를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거수하게하거나 전자투표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유무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4항은 삭제한다.

제44조 중 “결과를 선포한다”를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 제1항 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표결 수

15. 거수·기립 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

제48조 제1항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하고, “그러나 의장은 비밀을 요구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한다.

제52조제4항은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집행기관 등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 ①의장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자를 결정한다.

②의장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 없이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

제70조제1항 “**법 제79조제1항**”을 “**법 제91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제3항 “**법 제83조**”

를 “법 제95조”로 하며, 제5항은 삭제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 되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대학교수
2. 전직 지방의원 또는 전직 공무원
3. 지방자치 전문가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 ⑥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중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83조제1항 중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를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장 제87조 및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주민조례발안

제87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88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권자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8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

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의 2 (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9조의 2 (조례안예고) ①-----

----- 법 제77조제1항-----

제32조의 2 (5분 자유발언) ① 의

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 (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발언신청을 허가할 경우 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의원은 회기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1조 (표결방법) ① 표결 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거수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이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

41조 (표결방법) ① -----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거수하게 하거나 전자투표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유무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44조 (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5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13. (생략)

<신 설>

<신 설>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며, 시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그러나 의장은 비밀을 요하거나 공공의

제1항

<삭 제>

제44조 (표결결과선포) -----

-----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5조 (회의록의 작성) ① -----

1.-13. (현행과 같음)

14. 표결 수

15. 거수·기립 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

16.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주민-----

-----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공표할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 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③ (생략)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신 설>

<신 설>

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주민 -----.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제52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0조의2 (집행기관 등 각종위원회 위원 추천) ① 의장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자를

결정한다.

② 의장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
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 없이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
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
를 제출하게 한다.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
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③의 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

② (혁행과 같음)

(3) _____

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생략)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신 설>

-----. -- 법 제95조

-----.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2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 위원 중에서 호선 되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대학교수

2. 전직 지방의원 또는 전직 공무원

3. 지방자치 전문가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중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8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신 설>

<신 설>

제9장 주민조례 발안

제87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의장은 「주민조
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

<신 설>

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88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권자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8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